2019년도 제2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 . 회의 개요

o 일 자 : 2019. 10. 18.(금요일)

o 방 법 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
- 심의위원 : 전응준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임진모 위원

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**의결안건**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·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-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45건(안건번호 제2019-133539호~133638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2019년에 공개된 방송과 영화 관련 콘텐츠로서 그 중에는 방송 우리가 잊고지냈던 두번째: 연애의 맛(2019) 등, 영화 요로나의 저주(2019) 등의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불법 복제 전송 사안들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
- B 위원 : 본건 심의대상물은 방송, 영화 등에 복제물로서,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바 없고 그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도 없으며,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하여,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C 위원: 133539호부터 133638호까지 100건의 경우 최신 방송 및 영화에 대한 무단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 권고 가결함

2019년 제22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, 10, 28,

분과위원장 전응준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